#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1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 김두관·허종식·강준현

신정훈 · 김종민 · 김영배

주철현 • 서삼석 • 권칠승

이성만 · 고영인 · 민형배

김철민·문정복·양경숙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를 강화를 주요 과 제로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어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본령(本領)인 자치고권(自治高權)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 한 부분이 매우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다 실 질적으로 보장하여,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분권을 현저히 심화하 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음.

우선 자치의 근간인 조례 제정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

정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제29조).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하였음 (제132조제2항 신설). 그리고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18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

##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구

-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할 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 (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 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 정한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 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

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 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

- 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결과의 통보 및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 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

- 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당을 입안하여야 한다.
- 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 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 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

- 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 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 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 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 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광역시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 의 설치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 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1. 시 • 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 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 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 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필요가 있는 사무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 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 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 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 운 사무

#### 제2장 주민

-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 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 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

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한다.

-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알려야 한다.
-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 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 송
-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 2. 제1항제2호: 해당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3. 제1항제3호: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 4. 제1항제4호: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 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 ②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 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③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

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B)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 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 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6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 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 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

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7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 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제3장 조례와 규칙

- 제29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30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1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33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 ①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 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제34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6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선거

제37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장 지방의회

## 제1절 조직

제38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

다.

제39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40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1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 비
  -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 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4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 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

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 관·단체
-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7조에 따른 유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5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6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 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47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 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권한

- 제48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9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0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기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5조를 따른다.
- ①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 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5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 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제5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절 소집과 회기

- 제5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5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

- 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 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 제5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 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 다.
- 제60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1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62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 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3조(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 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제6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8조제1항,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절 위원회

- 제65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6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 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

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6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 제6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를 한다.
  -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7절 회의

- 제7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 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제74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奪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 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 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절 청원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 워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 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절 의원의 사직 · 퇴직과 자격심사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 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0절 질서

-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절 징계

-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다.
  -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

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시·군·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 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 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 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군·자치구 의회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1. 별정직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 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시 · 도: 20명 이내
- 2. 시 · 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

- 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 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 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6. 교원
  -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
-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

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

- 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시ㆍ

도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

- 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4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 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 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절 보조기관

-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는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 1명(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중 1명과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두는 부시장·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3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 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1. 궐위된 경우
  -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 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 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 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 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 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하부행정기관

-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하다.
-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②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임명한다.
-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제5절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 ·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소속 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 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 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절 예산과 결산

-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 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 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 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 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 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결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수입과 지출

-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절 보칙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 력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

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 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 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 · 의결한다.
  -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 는 그 장 간의 분쟁
  - 6. 시 · 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 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 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된다.
-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

- 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2절 행정협의회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 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협의회의 명칭
  -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4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 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3. 사무소의 위치

-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 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 를 설립할 수 있다.
  - 1. 시 · 도지사
  - 2. 시 · 도의회의 의장
  - 3.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4.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 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 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 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 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

- 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 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시·도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

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 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 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

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있다.
  -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

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제19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19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 ③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

# 제1절 설치

제196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7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8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

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199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3. 구성 지방자치단체
-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200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 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1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202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3절 운영

- 제203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 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 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4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하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5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 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6조를 준용한다.
- 제206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 산하여야 한다.
  -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

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7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4장,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9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다른 법률에서 시·도 또는 시·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9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9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경우에도 적용하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등에 관한 적용 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시 · 도: 300명 이상
  -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 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6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 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

- 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감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기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 제14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 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시·도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따라 시·도의회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 제1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 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 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 치법」 제7조"로 한다.
-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 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3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 조"로 한다.
-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 1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 조"로 한다.
-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 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②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 조"로 한다.
-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 조"로 한다.
- ❷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21호 중"「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4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 조"로 한다.

제15조 중"「지방자치법」 제112조"를"「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③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 조"로 한다.

③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 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지방자치법」 제113조"를"「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④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 조"로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도 불

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 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을 "제1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수에 관한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수에 관한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9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제74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지방자치법」 제124조"를"「지방자치법」 제139 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 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 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 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④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④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⑤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 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 조"로 한다.

ᡚ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

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 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 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 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를"「지방자치법」 제123

조"로 한다.

⑩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8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 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⑥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 법률 제16956호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⑥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5조"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